#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 (송갑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8050

발의연월일: 2022. 11. 2.

발 의 자:송갑석·강득구·기동민

김경만 · 김승남 · 김종민

도종환 · 문진석 · 민형배

박광온・박 정・소병훈

신영대 · 양향자 · 윤관석

유영덕 • 이병훈 • 이성만

이용빈 · 이장섭 · 이학영

이형석 · 조오섭 · 주철현

최종윤 의원(25인)

## 제안이유

광주 군 공항은 개항 당시 외곽에 위치하였으나 도시 팽창으로 인해 도심 한 가운데 자리하게 되면서 소음발생과 고도제한으로 주민의생활권이 침해되고 국방부의 소음피해 보상액으로 인한 국가 재정부담 등 국가적·사회적 낭비와 갈등이 지속되었음.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군 공항 이전과 함께 종전부지를 인근 지역과 연계하여 신성장 거점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.

군 공항이 국가 중요 국방시설이고 이전에는 막대한 재원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특성과 아울러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이전에 따 른 군 공항만의 이전이 불가피한 광주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국가 주 도의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.

나아가 광주광역시·전라남도의 주요 도시와 신 군 공항을 연계하는 도로·철도 등 교통망을 확충하고 인근 배후도시 및 첨단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조성하여 광주광역시·전라남도 지역의 미래 발전과 성장의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및 지방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신 군 공항 건설을 포함한 군 공항 이전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, 공항 연계 산업단지와 교통망 구축 등 군 공항 이전에 필요한계획수립, 추진절차, 사업시행, 소요재원의 조달, 국가의 행정적·재정적 지원, 개발사업에 필요한 특례 및 규제 완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# 주요내용

- 가.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을 국가주도로 원활하게 추진하고, 이전지역 및 종전부지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과 종전부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조).
- 나. 군 공항 이전과 함께 신 군 공항을 연계하는 교통망 확충 및 인근 배후도시와 첨단산업단지를 개발·조성하는 한편 종전부지의 신성 장 거점도시 조성을 기본방향으로 함(안 제3조).
- 다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 군 공항 건설, 이전지역 지원 및 종전

부지 개발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 하여야 하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(안 제4 조).

- 라. 군 공항 이전사업 방식은 기부 및 양여의 특례에 따라 신 군 공항을 건설하되 초과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하며 이전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을 국방부장관 및 종전부지지자체장이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함(안 제11조 등).
- 마. 국가는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 및 지원사업,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, 재정 지원 시 군 공항 관련 철도, 도로 등 교통시설, 이주단지 등 신도시의 조성, 산업단지 조성, 종전부지 개발 등에 우 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정부 재원의 선제적 투입이 필요할 경우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이전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1조 등).
- 바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전사업,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조세감면, 예비타당 성 조사 면제, 그 밖의 특례 등을 줄 수 있도록 함(안 제32조 등).

#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

### 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이전지역 지원과 종전부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을 국가주 도로 원활하게 추진하고 이전지역 및 종전부지의 발전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 - 1. "광주 군 공항"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호동 일원에 위치해 있는 제1전투비행단(K-57)을 말한다.
  - 2. "광주 군 공항 이전(이하 "이전사업"이라 한다)"이란 신 군 공항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.
  - 3. "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(이하 "지원사업"이라 한다)"이란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.
    - 가. 군 공항 이전지역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철도·도로·항만시설 등의 건설
    - 나. 군 공항과 연계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련 인프라 건설
    - 다. 군 공항 건설에 따라 주거지를 상실하는 자 등을 위한 이주단

- 지 등 신도시조성과 이에 수반된 지역주민편익시설, 관광시설 등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
- 라.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시행하는 지원사업
- 마. 소음완충지역을 활용하여 하는 사업
- 4. "종전부지"란 광주 군 공항이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부지를 말한다.
- 5. "이전부지"란 광주 군 공항이 이전되어 설치될 지역을 말한다.
- 6. "이전부지 주변지역"(이하 "이전주변지역"이라 한다)이란 이전부지가 소재한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및 이와 연접한 소음피해지역 시·군·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고 국방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.
- 7. "종전부지 개발사업"이란 종전부지를 활용하여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규모의 관광·상업 시설을 설치하고 첨단산업단지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.
- 8. "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"란 군 공항이 위치한 광주광역시를 말한다.
- 제3조(기본방향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군 공항을 이전하여야 한다.
  - 1. 국가 주도의 광주 군 공항 이전 추진
  - 2. 광주광역시 · 전라남도 등 주요 도시로부터 군 공항까지에 이르는

도로와 철도, 항만시설 등 교통망의 확충

- 3. 군 공항과 연계된 이주단지 등 신도시와 배후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인프라 건설
- 4.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을 활성화하는 국토의 균형발전
- 5. 종전부지 개발을 통한 국제규모의 관광·상업·첨단산업 도시 조 성
- 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전 및 지원사업,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 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전 및 지원사업,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5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이 법은 이전 및 지원사업, 종전부지 개발 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6조(다른 계획과의 관계) 이 법에 따른 이전 및 지원사업,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. 다만, 「국토기본법」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」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

리기본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# 제2장 이전부지의 선정

- 제7조(예비이전후보지의 선정) ①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군 공항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 부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의 건의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군 공항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군사작전 및 군 공항 입지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(이하 "예비이전후보지"라 한다)로 선정할 수 있다.
  -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하는 경우 이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고 선정 결과를 통보한다.
- 제8조(이전후보지의 선정) ① 국방부장관은 예비이전후보지 중에서 군 공항 이전후보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제2조제3호의 지원사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제22조에 따른 군공항 이전사업 추진위원회 심의 를 거쳐야 한다.
- 제9조(이전부지 선정계획의 수립·공고) ① 국방부장관은 이전후보지 를 선정하기 위하여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수립·공고한다.
  - ② 이전부지 선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- 1. 이전후보지

- 2. 제2조제3호의 지원사업 및 실행계획
- 제10조(이전부지의 선정) ① 국방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이전부지 선 정계획이 공고된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「주민투표 법」 제9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요구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유치를 신청한다.
  -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제22조에 따른 군공항 이전사업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선정한다.
  - ④ 국방부장관은 이전부지 선정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여 야 한다.

### 제3장 이전사업 방식 및 시행

- 제11조(이전사업의 방식 등) ① 제2조제2호에 따른 군 공항 이전·건설은 「국유재산법」 제13조(기부채납), 제55조(양여) 및 「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12조(기부 및 양여의 특례)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업시행자가 군 공항 대체시설을 기부하고, 국방부는 용도 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.
  - ②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원사업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한다.

- ③ 제1항에 있어 양여재산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국방 부장관이 부담한다. 이 경우「국방·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」 제5 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세출을 재원으로 할 수 있다.
- ④ 국방부장관은 군 공항시설의 원활한 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」에도 불구하고 이전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제2조제3호로 설치되는 시설 및 토지를 양여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
- ⑤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부 및 양여 방식으로 군 공항 이전 등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국회에 보고한다.
- 1. 이전사업 추진계획
- 2. 이전부지의 군 공항시설 설치계획
- ⑥ 이전사업에 필요한 계획수립, 사업시행 등 이전사업의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」을 적용한다.
- 제12조(이전 및 지원사업의 시행자) ①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사업은 「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3조(국방·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)에 따라 시행한다.
  - ② 제2조제3호에 따른 이전지역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및 종전부지 지자체장은 이전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지원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관별로 이전지역 시행계획(이하 "시

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행자는 이전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- 제13조(기부 및 양여재산의 평가) ① 군 공항 대체시설로 기부하는 재산과 용도 폐지 후 양여하는 재산은 「국유재산법」 제3조의 기본 원칙에 따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절차 및 방법, 평가금액 산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4조(군 공항 이전시설 추가 설치) ① 국방부장관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군 공항의 시설규모를 고려한 이전시설의 소요를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하여야 하며, 신 군 공항 건설사업에 관한 합의각서를 체결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에게 추가시설의 설치를 요구할 수 없다.
  - 1. 신 군 공항 건설사업의 민원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시설
  - 2. 군 작전수행에 필요한 시설로서 추가 설치가 필요한 시설
  - 3. 「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방·군사시설사업 계획의 변경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설
- ② 제1항에 따른 추가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. 제15조(이전시설 국가지원) 군 공항 이전에 따른 미군 관련시설 이전,

- 이전지역 진입도로·철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.
- 제16조(이전사업을 위한 협의기구) ① 국방부는「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의기구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  - ② 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 제4장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

- 제17조(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의 수립) ① 국방부장관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2조제3호를 포함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(이하 "지원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해당지원계획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
  - ②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이전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.
  - ③ 지원계획은 제22조에 따른 군공항 이전사업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.
  - ④ 지원계획의 수립절차·요건 및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

으로 정한다.

- 제18조(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의 수립)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관별로 연차별 지원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 -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제22조에 따른 군공항 이전사업 추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③ 시행계획의 수립절차·요건 및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9조(토지수용) ① 사업시행자는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·물건 또는 권리(이하 "토지등"이라 한다)를 수용(사용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할 수 있다.
  - ②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
- 제20조(부담금의 감경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 대한 「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개발부담금, 「농지법」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, 「초지법」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, 「산지관리법」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,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・

사용료 및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각각의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.

제21조(부대공사의 시행) ① 제12조에 따른 시행자는 이전 및 지원사업이 아닌 공사로서 이전 및 지원사업에 따라 필요하게 되거나 이전 및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공사(이하 이 조에서 "부대공사"라 한다)는 이를 이전 및 지원 사업으로 보고 해당 사업과 함께 시행할 수 있다.

② 부대공사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 제5장 군공항 이전사업 추진위원회

- 제22조(군공항 이전사업 추진위원회) ① 광주 군 공항 이전의 효율적 인 추진과 이전지역 지원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위원회(이하 "추진위 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 - ②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 - 1. 이전후보지 및 이전부지 선정
  - 2. 제17조에 따른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
  - 3. 제18조에 따른 연차별 지원시행계획
  - 4. 이전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

- 5. 이전사업에 대한 규제의 개선에 관한 사항
- 6. 이전사업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와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
- 7. 그 밖에 이 법에서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거나 군 공항 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-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④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,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, 위촉위원은 이전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가 위촉하는사람으로 한다.
- 1. 기획재정부차관, 행정안전부차관, 국방부차관, 국토교통부차관, 산업통상자원부차관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
- 2. 예비이전후보지를 포함한 이전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장
- 3. 예비이전후보지를 포함한 이전지역을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장
- 4. 종전부지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장
-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관계 기관 및 지방자 치단체의 장 등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.
-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

한다.

- ⑦ 추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국방부차관이 된다.
- ⑧ 추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 공항 이전사업 추 진실무위원회(이하 "추진실무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- ⑨ 그 밖에 추진위원회 및 추진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 제6장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 등

- 제23조(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)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」,「도시개발법」,「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률」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용한다.
- 제24조(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) ①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23조의 관계 법률에 따른 시행자로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시행자는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- 제25조(종전부지 개발계획의 수립) ① 제24조에 따른 시행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(이 하 "개발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- ②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인구수용계획
- 2. 토지이용계획
- 3. 원형지로 공급될 토지와 그 개발방향
- 4. 교통처리계획
- 5. 도시문화계획
- 6. 경관계획
- 7. 환경보전계획
- 8. 교육·문화시설 및 보건의료·복지시설의 설치계획
- 9. 도로.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
- 10.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
- 1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 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지역
- 12. 재원조달계획
- 13. 종전부지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
- 14. 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지침
- 1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③ 제24조에 따른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,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- 제26조(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) ① 제24조에 따른 시행자는 제25조에 따라 개발계획이 수립·고시되었을 때에는 해당 광역지 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, 재원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(이하 "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"이라 한다)하여야 한다.
  - ②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은 단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.
  - ③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에는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제16 조제4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 등과 「환경영향평가법」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반영되어야 한다.
  - ④ 제24조에 따른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 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 고,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  - ⑤ 제4항 따라 고시된 사항 중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5조에서 정하는 지역·지구 등으로 결정·고시된 것으로 보는 사항의 지형도면 고시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8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.
- 제27조(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인·허가 등의 의제) ① 제26조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수립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·허가·인가·결정·신고·지정·면허·협의·해제·심사 등(이하 "인·허가 등"이라 한다)을 받은 것으로 보며, 해당 종전부지 개발사업

실시계획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·허가 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.

- 1. 「건축법」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,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,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,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·신고사항의 변경,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·축조신고,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
- 2. 「골재채취법」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
- 3.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의 점용·사용허가,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,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·사용 실시계획의 승인,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,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고시,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매입목적 변경의 승인
- 4. 「관광진흥법」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,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의 지정,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
- 5. 「광업법」 제24조에 따른 광업권설정의 불허가처분 및 같은 법제34조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
- 6. 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 제76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시 행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·승인

- 7. 「국유재산법」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
- 8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른 도시·군관 리계획의 결정,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, 같은 법 제 86조에 따른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 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
- 9. 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」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호 구역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 등 에 관한 협의
- 10. 「낙농진흥법」 제4조에 따른 낙농지구의 해제
- 11. 「농어촌정비법」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 획의 승인
- 12. 「농지법」 제31조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변경 및 해제,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·협의,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·협의
- 13.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3조, 「물환경보전법」 제33조 및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
- 14. 「도시개발법」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,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
- 15. 「도로법」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

사 시행의 허가,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(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·고시,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 구역의 결정,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)

- 16. 「사도법」 제4조에 따른 사도(私道) 개설허가
- 17. 「사방사업법」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 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
- 18. 「산림보호법」 제9조제2항제1호·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(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)에서의 행위의 허가·신고, 같은 법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해제, 「국유림의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3항에 따른 국유림의 조림·벌채 등의 신고,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에 따른 산림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·신고
- 19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사업 시행자의 지정, 같은 법 제17조·제18조·제18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·일반산업단지개발·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 실시 계획의 승인
- 20.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및 신고

- 21. 「산지관리법」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·해제, 같은 법 제 11조에 따른 산지전용·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, 같은 법 제 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,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,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·신고 및 같은 법 제 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
- 22. 「소하천정비법」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승인,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 등 정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등의 점용의 허가
- 23. 「수도법」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,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,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,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
- 24.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
- 25.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에 따른 물류 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협의
- 26.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
- 27. 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
- 28. 「주택법」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
- 29.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

사용·수익허가

- 30.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·변경 및 완료의 신고
- 31. 「집단에너지사업법」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 에 관한 협의
- 32.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의 승인
- 33. 「초지법」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,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 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
- 34.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
- 35. 「하수도법」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(분뇨처리시설만을 말한다) 설치의 인가,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,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신고
- 36. 「하천법」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,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.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
- 37. 「택지개발촉진법」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
- 38.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

- 39.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 점포의 개설등 록
- ② 제24조에 따른 시행자는 인·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포함하여야 한다.
- ③ 제24조에 따른 시행자는 제26조에 따른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,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고,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
- ④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·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이나 광역시·도의 조례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, 수수료·사용료 등을 면제한다.
- 제28조(종전부지의 특별구역 지정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광역지 방자치단체장은 종전부지를 다음 각 호의 특별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.
  - 1. 「관광진흥법」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
  - 2. 「건축법」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
  - 3.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

- 4.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
- 5. 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에 따른 스마트도시 특화단지
- 6. 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 특구
-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특별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- 제29조(기반시설의 설치 및 우선지원 등) ① 전기·통신·가스, 지역난방 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부담은 「도시개발법」 제55조를 준용한다.
  - ② 국가는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(주변지역을 포함한다) 등에 필요한 도로, 상하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과 부대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.
  - ③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종전부지 인근 지역의 기능이 원활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종전부지 주변지역 기반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
  -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및 일정 등을 조정·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기반시설 조정위원회를 둘수 있다.
  - ⑤ 제4항에 따른 기반시설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⑥ 기반시설의 설치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반시설 조정 위원회가 정한 설치계획 및 일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제30조(종전부지 개발사업 지원 심의) ①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효율적 인 추진을 위한 중요 사항 심의는 제22조에 따른 추진위원회에서 대행한다.

제7장 이전 및 지원사업,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위한 지원

- 제31조(정부의 재정 지원) ① 정부는 이전, 지원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.
  -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재정 지원의 경우 제2조제2호·제3호·제7호의 사업에 우선하여야 한다.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부 재원의 선제적 투입이 반드시 필요할 경우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이전에도 지원할 수 있다.
- 제32조(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) ① 국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이전, 지원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2조 및 제24조에 따른 시행자에 대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, 「관세법」 및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, 「농어촌특별 세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·소득세·관세·취득세·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.
  - ② 국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이전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

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2조 및 제24조에 따른 시행자에 대하여 「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」, 「농지법」, 「초지법」, 「산지관리법」, 「하천법」,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, 「자연환경보전법」, 「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, 「환경개선비용 부담법」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및 「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개발부담금, 농지보전부담금, 대체초지조성비, 대체산림자원조성비, 교통유발부담금, 생태계보전협력금, 공유수면 점용료·사용료, 하천점용료·사용료, 환경개선부담금,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- 제33조(민간자본 유치) 제12조 및 제24조의 시행자는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, 지원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.
- 제34조(지역기업의 우대)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·물품·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전, 지원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.
- 제35조(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) 사업시행자는 이전사업에 따른 이주자 및 이전지역의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거나 참여시킬 수 있다.

- 제36조(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 등에 관한 특례) 제12조 및 제24조에 따른 시행자는 이전, 지원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- 제37조(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특례) ①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전 및 지원 사업,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관련 산업단지의 관리권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. 다만,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  -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전 및 지원 사업,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의 기능을 변경하여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다. 이 경우 전환절차등에 관하여는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.
- 제38조(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및 자금지원 등) ① 국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이전 및 지원사업,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(이하 "입주외국인투자기업"이라 한다)에 대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, 「관세법」 및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, 관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.

- ② 국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③ 국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사용허가 등을 하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사용허가 등을 하는 건물을 축조할 수 있다.
- ④ 국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이전 및 지원사업,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(이하 "기업등"이라한다)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하여 국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「국유재산법」,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.
- ⑤ 국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는 「국유재산법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이전 및 지원사업, 종전부지 개발사업 시행되는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등에 대하여 국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·수익 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.
- 제39조(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) 국가는 지원사업 및 종전부 지 개발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진사업에 대하여 「국가재정법」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.

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「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행한 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.